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277
----------	-----

제출연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을 자문함으로써,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는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함(안 제2조)
- 감사위원회는 7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3조 및 제4조)
 - 5인은 도내에 거주하는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위촉
 - 2인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 감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6조)
-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7조)

- 감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함(안 제8조)

3. 의안 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입법예고 결과 의견 : 의견 없음

충청북도감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부패방지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충청북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

1.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부패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도민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조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 5인
2.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 2인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충청북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가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비밀엄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위원회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운영실적을 각각 1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